2024년 제10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

[1호 안건: 용현·학익1블록 도시개발구역 공동4블록 공동주택 신축(구조)]

•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건축과	심의일자	2024. 4. 23.
건축종별	[○] 신축, [ ] 증축, [ ] 대수선, [ 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㈜디씨알이 대표 정창현		

대지현황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		
	용현학익1블록(공동4블록)	관련지번	
	대지면적 67,300.7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3종 일반주거지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9,162.05㎡	건폐율 13.61%	층수 지하 : 3층/ 지상 : 47층
	주용도 공동주택(아파트)	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9동
	최고높이 132.9m	용적률 249.99%	연면적 합계 248,512,239㎡

	구 분	심의결과
심의내용	(구조분야)관련	○ 내진상세 및 내진철근을 적용(지상구조물 한 스팬 및 지하1층 주요 부재 주철근 등 필요부분) ○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시 반영할 부분은 설계단계에서 반영할 것 (파라펫, 캐노피, 피난계단 등)
	(토목분야)관련	○ 굴착대상 지층 중 투수층 구간은 SCW 벽체누수가 우려됨에 SCW2열 또는 보강그라우팅(차수) 적용 검토할 것 ○ 705~706동 구간 SCW→JSP→PHC, PE 기초순서상 PE기초 시공불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재검토 요망 ○ 장비주행성 검토(치환두께)를 고려하여 흙막이벽체 재검토 요망 (대토 취약단면 2개소 이상) ○ PHC파일에 대한 측방유동을 포함하여 재검토 요망 ○ 설계보건대장 수정 · 보완할 것(PHC,SCW,PE기초 포함) ○ 위 조건 이행사항을 기술사 확인 후 승인권자에게 제출할 것
	(행정)사항	○ **사전검토의견 반영할 것** ○ 심의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,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람 ○ 시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므로, 건축 인·허가 때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

심의결과	[ 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 ] 재검토 의결 [ 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

2024년 제10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

[2호 안건: 오류동 141-1외33 검단16호 공원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(구조)]

•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건축과	심의일자	2024. 4. 23.
건축종별	[○] 신축, [ ] 증축, [ ] 대수선, [ 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㈜한국토지신탁 대표이사 김정선		

대지현황	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		
	141-3	관련지번 외33	
	대지면적 38,244.0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2종 일반주거지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6,201.50㎡	건폐율 16.21%	층수 지하 : 3층/ 지상 : 27층
	주용도 공동주택(아파트)	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9동
	최고높이 81.6m	용적률 237.74%	연면적 합계 143,659,217㎡

	구 분	심의결과
심의내용	(구조분야)관련	○ 지반등급은 원안 설계(S2,S4) 반영 적용할 것
	(토목분야)관련	○ 영구앵커 적용·시공에 따른 품질시험 및 수량을 기재하고 시공 후 긴장력 손실시 재인장 방법 및 보강대책 수립(시공완료 후 유지관리(계측)계획서 별도 수립 요망)할 것 ○ 당초 적용된 친환경 그라우팅 공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, 착공전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감독 확인 후 적용할 것 ○ 위 조건 이행사항을 기술사 확인 후 승인권자에게 제출할 것
	(행정)사항	○ **사전검토의견 반영할 것** ○ 심의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,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람 ○ 시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므로, 건축 인·허가 때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

심의결과	[ 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 ] 재검토 의결 [ 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